

14. 農地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14,835號 1995. 1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법 제2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뿌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조 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

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벼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법 제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 함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 ②개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6조(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의 소유인정 절차등) ①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신청서를 취득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10조·제21조·제22조 및 76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당해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경할 것이 인정될 것
2.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게

되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의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포함한 소유농지의 전부를 자경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장비를 해당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그 보유계획이 확실할 것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될 것

가.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게 되는 농지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화 되어 있을 것

나.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농업소득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결혼이나 친족을 부양할 목적으로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의 확인) 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서 미리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지체없

이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법 제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닐 것(법 제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농지취득자격확인을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법 제8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말한다)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 및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2.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제11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②법 제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숙기, 재배관리 및 수확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12조(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당해 농지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제14조(농지의 처분위임등) ①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한 동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 위임증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③농어촌진흥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제15조(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5.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6.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제19조(등기의 촉탁)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

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자단체·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19조 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토,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10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보전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농지의 임대차등

제25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2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 6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②법 제2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제26조(임대차연장기간의 특례) 법 제24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농지에 경작중인 농작물이나 재배중인 다년생식물의 수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임차료상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지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2. 시설원예작물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년생식물에 대한 임차료의 상한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중 전·답 또는 과수원의 구분에 갈음하여 해당 작목별로 그 상한을 정할 수 있다.
3. 임차료상한은 당사자간에 임차료를 수확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확후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임차료 상한에서 임차료의 지급일부터 수확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차료의 상한은 해당지역의 평균적인 농업인의 소득수준과 임차료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8조(임차료의 지급) 임차료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당해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공과금등의 부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임대차농지에 대한 공과금 및 농지개량비 기타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용자금의 상환금
 - 나. 천재·지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
 -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중 농업용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 나.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0조(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

우

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농지를 전대한 경우

나. 임차인이 고의로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훼손하거나 황폐하게 한 경우

라. 임차인이 파산의 선고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마.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가. 임차인이 질병·징집·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임차농지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되거나 황폐하게 되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농지를 보존하거나 개량함으로써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4장 농지의 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32조(농업진흥지역등의 고시) ①법 제

32조(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연월일
2.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①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3.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4.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1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②법 제3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직접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

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3. 목욕탕·구판장

④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은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⑤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

⑥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⑦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2.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 : 1천500제곱미터 이상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 3천제곱미터 이상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 1천제곱미터 이상
4. 기타시설 : 1만제곱미터 이상

제36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당해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 기타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

③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

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

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 제37조 제2항 각호의 사항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

는 때에는 제37조 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38조 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7조 제2항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력에 관하여는 제37조 제4항 및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5.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 제4항 및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

간등) ①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제4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요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2조 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42조 제2항 각호

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농림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등) ①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대상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등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에 같음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농림수산부장관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7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사용) ①농림수산부장관등은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농지로의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3항의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그 복구비용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잔액은 예치자에게, 보험금의 잔액은 보험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반환) ①농림수산부장관등은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당해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반

환받고자 하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금속제품 제조·가공시설
 - 나. 산업용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 다. 기타 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가공시설
 - 마.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시설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②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산업용화학제품 제조시설
 - 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다. 제1차 금속 제조시설
 - 라. 가공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조 시설중 도금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마. 석유정제시설
 - 바. 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하는 가공시설을 제외한다)

사. 섬유 제조시설중 염색시설

아. 종이 및 담배 제조시설중 종이 제조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배출시설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③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

3.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구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 제2항·제63조·제65조·제68조 및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제50조(전용허가등과 농지조성비의 납입)

①농림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등(이하 이 항 및 제51조 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부장관(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

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등 농지조성비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조성비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
2.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기타 농지조성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

비의 부과금액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3조(농지조성비 수납업무의 대행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결정된 농지조성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0조 및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납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등에 관한 업무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에 부과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등) ①농어

촌진흥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농어촌진흥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수산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전에 농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농어촌진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로 농지를

전입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56조(농지조성비의 환급)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로 납입한 금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

만, 그 농지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조성비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조성비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7조(농지조성비의 감면)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8조(농지조성비의 수납)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조성비를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①농림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간등) ①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

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는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금액과 해당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치등에 관하여는 제50조 제1항·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산업지구를 말한다.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 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 제4항 및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제62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의 정수등) ①위원회의 위원 의 정수는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47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
2.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3. 농지개량조합, 그 지소 및 출장소

제64조(위원의 임기)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의 선임)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제66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8조 제5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약에 관한 확인
3.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구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72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5.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또는 조사에 관한 권한

6. 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미
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 미
만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
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
다)·협의, 복구계획의 제출·복구비용
의 예치조치 등에 관한 권한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
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
한 권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
임된 경우

나.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다.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 규정
에 의한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
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
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
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4조의 규
정에 의한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지
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
5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행
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전에 주무관

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당해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기타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의 최소면적) 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5조(수수료)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300원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천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천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300

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 1천원

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 3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농림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3. 법 제59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시·구·읍·면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

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농어촌진흥공사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농지위원회규정
3.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
4. 농지대가상환채납금징수규정
5.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6.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7.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8. 지력증진법 시행령

제3조(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농지대가상환채납금징수규정·농

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관상수재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6조 내지 제49조, 제49조의 2,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57조 내지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2 제2항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단서”를 “농지법 제40조 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 3 본문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준용한다.

제52조의 4 제2항중 “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를”을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등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단서·제4상 내지 제6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의 연장, 독촉장의 발부,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 8(과오납금등의 반환) ①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 등의 반환에 관하

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 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납한 전용부담금 중에서 이를 환급한다.

제52조의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 10(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①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2·제52조의 3·제52조의 4·제52조의 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제2항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제2호에서 정한 농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따

라”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2항(동항 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에 한다.

②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 제4항, 제8조 제5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경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 록체육시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 제3항,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 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

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 38.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 39.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 42.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

구역·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3. 소하천정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농지법이 제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범위,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농업인의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등으로 정함(영 제3조).
- 나. 이농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이농전 농업경영기간을 8년으로 정함(영 제4조).
-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시효의 완성·환매권의 행사 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영 제7조).
- 라. 농지의 소유자가 작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30일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주요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서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 마. 농업인 등이 농지를 담보로 하여 영농자금 등을 쉽게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를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함(영 제13조).
- 바. 농업인 등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기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서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함(영 제24조).
- 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에 관련되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지정고시 등의 절차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농업진흥지역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정함(영 제31조 내지 제36조).
- 아.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절차, 허가기준, 농지조성비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정하고,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어촌산업지구안에서의 농지전용신고절차를 정함(영 제37조 내지 제61조).
- 자.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및 지력증진법시행령 등 농지법으로 폐지한 법률과 관련된 8개 대통령령을 폐지함(영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등(제41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3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설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 300제곱미터 이하)
3. 제34조 제5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축산업용시설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 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6.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 시설·퇴비장 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라. 목욕탕·구판장	제한 없음	제한 없음(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하)
7. 제3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양어장 및 양식장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9. 제3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 1. 위표에 규정된 시설(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설치자의 범위에 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별표 2]

농지조성비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제57조 관련)

(단위 : 퍼센트)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3. 산림법 제1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임도	100	100
4. 철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한다) 및 고속철도	100	100
5.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7.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	100	100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10.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1. 초지조성용지	100	100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12.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이 농지조성비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13.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14.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3천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15.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3천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16.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사업용지	50	100
1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50	100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18.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19.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농작물, 종묘관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21. 국방·군사시설	50	100
22.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50(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 용지의 경우에는 100)	50(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 용지의 경우에는 100)
23.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50	50
24.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25.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목원	50	50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처리시설	50	50
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29.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30.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	50	50
3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 제2호 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의 시설과 동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50	50
32.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3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3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조성비를 감면받는 시설이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비고 : 시설구분 제14호·제15호·제18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73조 제1항 관련)

신고 또는 고발사항	근거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 (건당)
1.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4조 제3항	50만원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4조 제4항	10만원

신고 또는 고발사항	근거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 (건당)
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4조 제4항	50만원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법 제54조 제5항	30만원
5.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4조 제6항	30만원
6. 법 제3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법 제54조 제2항	30만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4조 제1항	10만원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6조 제4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계법령	과태료금액
1.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는 경우	대리경작자의 수확을 방해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100만원이하
	대리경작자가 경작중인 농작물을 훼손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80만원이하
	기타 대리경작자의 농작업을 방해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50만원이하
2.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법에 의한 처분·조치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100만원이하
	기타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50만원이하
3.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에 의한 처분·조치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100원이하
	기타 허위로 검사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50만원이하